
**「2024년도 종합유선방송사
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」
제 안 요 청 서**

2024. 4.



디지털통신융합본부 디지털통신융합사업팀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.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당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기타사항>
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·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목 차

I . 사업개요	1
II . 제안 요청 내용	3
III .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	15
IV . 입찰안내	21
V. 별지서식	22

1. 사업명 : 종합유선방송사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

2. 사업금액 : 금404,580,000원(금사역사백오십팔만원)/부가가치세 포함

3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4년 12월 15일

4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태풍, 장마, 코로나19, 화재 및 정보통신사고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추세

- 재난방송 횟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보 전달체계 미흡

○ 긴급입찰 사유

-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자동자막 송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·정확하게 제공하여,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사업임

- 8VSB 채널자막키어 제작·납품 및 시스템 연동 테스트 일정(9월)에 맞추어 입찰공고 기간 조정이 불가피함

- 신속한 디지털 재난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국가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발주가 필요함

5. 추진 목표

-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상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, 국민에게 신속·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재난피해 최소화
- 자동자막송출시스템 도입을 통해 재난정보 방송 지연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송출시간 단축 등 신속·정확한 재난방송 실시
 -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대상 자동자막송출시스템(8VSB 채널자막키어 등) 단계적 지원

6. 주요내용 : 세부내용은 「II.제안요청내용」 참조

사업구분	사업대상*	지역	지원내역**
종합 유선 방송	MSO	서울 경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8VSB 채널자막키어· 8VSB 채널자막키어 프레임· 8VSB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· 8VSB용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
계	3개 사업자		

* MSO별 지원은 8VSB 자막키어 설치 및 운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 MSO별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내역 일부 조정 가능

7. 추진일정 및 절차

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II | 제안 요청 내용

1. 제안 요청 사항

□ 사업개요

- 종합유선방송사인 MSO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송출 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
 - MSO별 시스템 구성과 운영현황을 고려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장비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재난 데이터 연동 지원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(제40조)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의무가 있으나 수동 자막송출방식으로 인한 송출 지연, 정보/채널 누락 등 재난방송 전달에 어려움 발생
 - ※ 시스템(EDBS, 과기정통부)→종합유선방송사(PC화면)→자막 재가공(방송사)→송출
- 신속·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재난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지원하여,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

□ 사업목표

- MSO별 운영 중인 8VSB 채널 중 상위 70%가 재난방송이 송출되도록 8VSB 채널자막키어, 자막키어 프레임 등 시스템 구축 물품 지원
- MSO에 설치된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동이 가능하고,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자막송출이 가능한 키어 관리서버 지원
- 일부 MSO에서 운영중인 8VSB용 송출서버(트랜스코더)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,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

□ 사업추진체계

○ 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·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주요 역할

구 성	주 요 역 할
과학기술정보통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8VSB 채널자막키어 지원 사업 총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 기본계획 수립-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 추진 관련 관리·감독 총괄
한국방송통신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8VSB 채널자막키어 지원, 구축 지원 사업 수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 세부 수행계획 수립- 참여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- 방송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재난방송 운영 협력
사업수행 참여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8VSB 채널자막키어 방송사별 구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장비 공급과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- 장비 운영 교육 및 유지보수 시행

□ 주요 과업내용

가. 납품 및 설치 지원사항

1) 8VSB 채널자막키어 : 다채널 IP형식 디지털로 압축된 방송신호의 트랜스코딩* 과정에서 재난자막을 삽입해 주는 장치

- 8VSB 송출방식에서 각 채널마다 자막을 표시하는 장치로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계하여 재난정보를 표출하는 기능 보유

* Transcoding : 압축된 방송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(디지털→디지털)

- 정부 재난경보시스템의 재난정보를 자동자막 송출서버로 수신하여,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방송화면에 재난자막 삽입 및 송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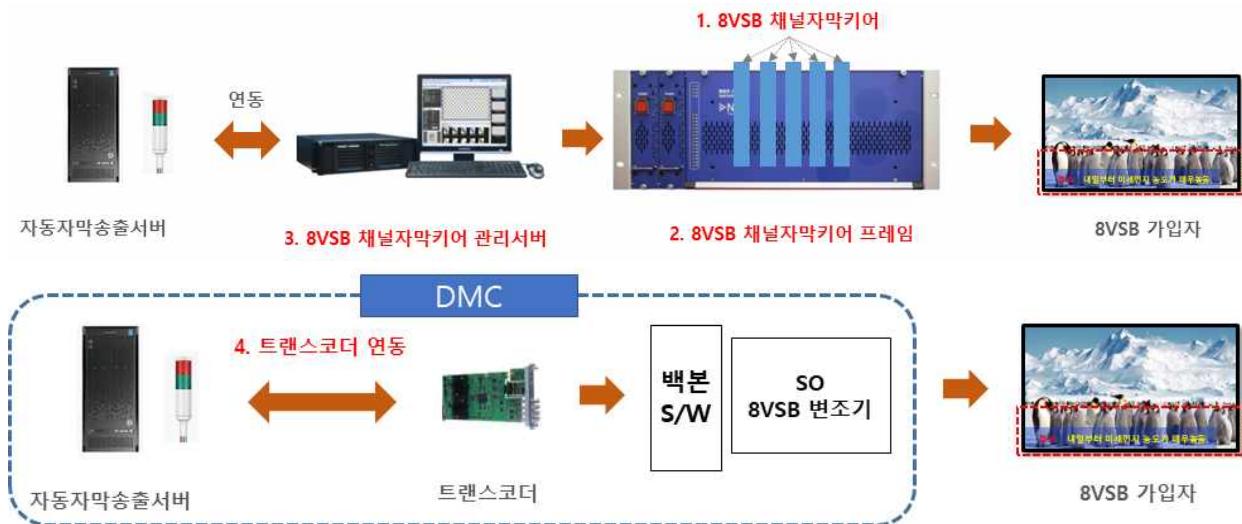
2) 채널자막키어 프레임 : 8VSB 채널자막키어 모듈을 실장하기 위한 장치로 자막키어별 네트워크 관리 및 데이터 스위치 기능 수행

3)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 : 자동자막 송출서버와 연동*이 가능하며, 8VSB 채널자막키어를 통해 자막을 송출하는 자막키어 관리서버

* MSO별 서로 상이한 시스템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기반 연동 지원

4) 트랜스코더 기능추가 : MSO에서 운영중인 8VSB용 송출서버(트랜스코더)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,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트랜스코더의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

< 8VSB 재난방송 송출 체계 중 납품·설치 사항 >



나.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

사업 구분	종합유선 방송사업자	8VSB 채널자막키어*	채널자막키어 프레임*	채널자막키어 관리 서버*	트랜스코더 기능 추가	참고사항
						자막키어 제조사
MSO	SK브로드밴드	44채널	4식	1식	.	네스테크놀로지
	HCN	.	.	.	○	슈마비전
	CMB	.	.	.	○	네스테크놀로지
합계	3개사	44채널	4식	1식	2개사	

* 지원 수량은 MSO별 운영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※ 지원장비 설치·연동을 위한 인프라 설비(네트워크 등)는 해당 MSO에게 제공받아 사용

다. 납품 제품 규격 및 지원사항

1) 8VSB 채널자막키어

○ 일반규격

- IP 방식 방송 Stream의 트랜스코딩과 영상 스케일링, 그래픽 데이터 삽입을 동시 지원
-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, 복수의 채널에 동시 및 개별 송출이 가능
- 장치 장애 시 Hot Swap에 의한 신속한 복구기능 제공
- MPEG2 및 H.264 포맷 상호 변환 지원

○ 하드웨어 부분

- Input Video : MPEG2 / H.264 / 1080i 59.94
 Audio : All Format
- Encoding Video Format : MPEG2 / H.264
 Video Transcoding : 1920 x 1080i
 Audio Transcoding : MPEG1, AAC
- 기타 설치공사 포함, 전원 이중화 제공

※ “나.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”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

2) 8VSB 채널자막키어 프레임

○ 일반규격

- Gigabit Ethernet Input, RJ45 interface
- 고화질의 최신 Codec Chip 적용
- 자막키어 Module 정보를 Network으로 조정 및 감시 가능

○ 하드웨어 부분

- Voltage : 100V ~ 220V, Free Volt 50/60Hz
- Power Supply : Redundant, Separate AC , Over Voltage Protection
- Network IGMP Support : V1, V2

※ “나.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”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

3) 8VSB 채널자막키어 관리서버

○ 일반규격

- 자체자막 송출 기능이 있는 CG모듈을 통해서 방송 Stream에 문자 삽입을 위한 송출 스케줄이나 서식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채널에 송출
- 그룹, 채널별 자막 스케줄 등록, 편집 등 다양한 관리기능 제공
- 8VSB 채널자막키어를 원격 제어, 모니터링 등 장비 관리기능 제공
- Http 호출방식을 사용하여 자막정보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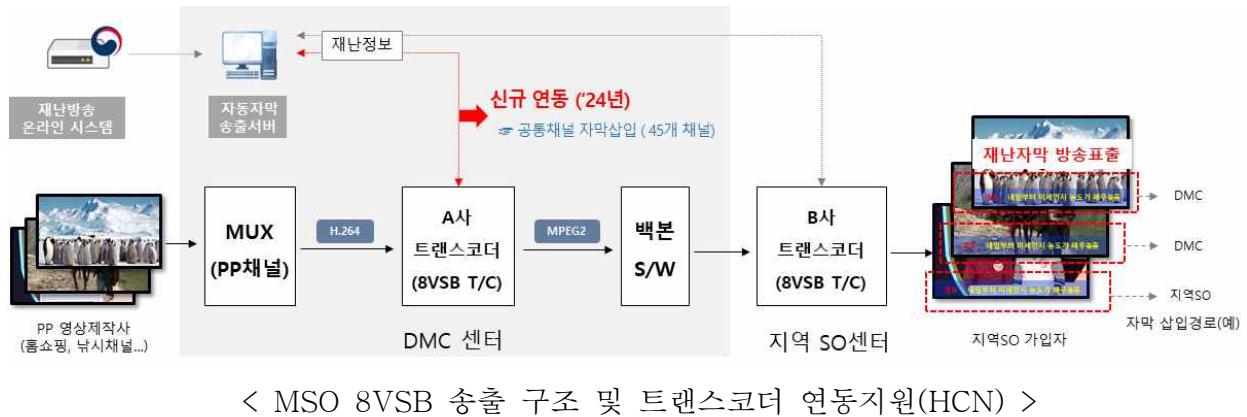
○ 하드웨어 부분

- OS Windiows 10 pro 이상
- CPU AMD RYZEN7 4th Gen, 5800x 이상, CPU core 8개 이상
- SSD Crucial Micron BX500 250GB SSD 이상
- Memory 32GB 이상
- Power 마이크로닉스 Classic 2 Gold Fullmodular 1050W 230V 이상
- Network 이더넷 기가 포트
- 기타 설치공사 포함, 전원 이중화 제공

※ “나. 사업자별 납품 및 설치 지원내역”을 참조하여 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의 호환가능 장비로 제공되어야 함

4) 트랜스코더 기능 추가

- DMC에서 운영 중인 8VSB용 송출서버(트랜스코더)와 자동자막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연동하여, 자동으로 자막송출이 가능하도록 자막삽입 옵션 제공 및 지원



- 자동자막 송출서버 ↔ DMC 내 트랜스코더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송출서버의 재난정보를 자막으로 변환 및 자동 삽입 옵션 지원
- 기능 적용 시 자동자막 송출서버에 연동된 설비나 서비스 등 기존 운용 중인 장비에는 문제가 없도록 적용

구 분	주요 사항
기능 옵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막 스케줄러 및 자막 채널 설정 기능 추가 등 UI 관리 ○ 자막 송출 로그 저장 및 추출 기능 ○ 자막 수정 및 중단 기능 ○ 자막 크기, 폰트, 백그라운드,(최대 800자), 글자/배경색 설정

* 상기외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MSO와 협의 후 반영 지원

라. 납품 시 기본지침 사항

1) 방송시설 설치 일반

- '장비 설치'라 함은 설치장소 상면 협의 및 확보 후 지정된 위치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입출력 신호용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모두를 연결하는 것을 말함
- 공간별 구축 장비의 케이블 및 연결선, 부품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함
- 모든 장비에는 설치 후 명판(Name Plate)를 부착하여야 함
- 신호선 및 전원선 등은 팽팽히 당겨지지 않도록 10~20%의 여분을 두고 결선하여야 함
- 배선에 사용하는 각 케이블은 영상, 음향, 전원 등으로 분류, 식별이 용이하게 색상을 달리한 Cable을 사용해야 하며, 각 신호원과 종단부에 이르기까지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라벨링 부착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. 또한,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Noise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지처리(Loop 방지) 방안을 제안해야 함
- 장비 설치공사는 각종 도면, 설명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함
- 공사 도중 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사에 사용될 기기 또는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
- 시스템 이전 또는 구축 도중에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별도의 지시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
- 장비는 수직, 수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고, 배선 및 부품의 조립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, 작업 완료 후 반드시 현장 감독자의 입회하에 점검을 받아야 함

-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초기 전원투입 시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
- UTP 네트워크 케이블은 CAT.6을 제공해야 함
- 모든 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, 할 것이며, 양단 연결 부위에도 심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모든 배선은 가지런히 포설한 후 선간은 케이블 Tie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하고, 비디오 및 오디오 케이블은 전원선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충분한 곡률반경을 갖도록 처리하여야 함
- 커넥터 접속작업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,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공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함
- 배선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도면을 확실히 숙지한 후 결선하여야 함

2) 시험

- 장비 설치 및 연동작업을 완료 후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음

3) 하자보수

- 납품 설치된 물품은 검수완료 후 1년간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하자가 발생한 경우 최단시간 내 재난정보 송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하여야 함

2. 사업수행 지침

□ 착공계 제출

-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함

- 착공계 2부
- 대표자 사용인감계 2부
- 대표자 각서 2부
- 투입인원 명단 2부
-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2부

□ 납품·설치 완료검사(검수)

- 납품·설치 완료검사는 납품·설치·연결이 완료된 후 납품·설치 완료검사 7일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- 검수요청서 2부
- 운영 매뉴얼 2부
- 납품확인서 2부
- 검수 세부내역 및 사진첩 2부
-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

□ 과업 보고

- 계약자는 효율적인 과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·설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함

□ 수시보고 및 협의

- 사업수행과 관련된 타 기관의 협조 요청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

□ 사업의 변경 등

- 사업시행 중에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사업의 중단 등

-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
 - 발주기관에 의해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

□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-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
 -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
 -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 -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
□ 제출서류

구 분	서 류 명	부수	제출기한	비고
착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착공계 · 사용인감계 · 대표자 각서 · 투입인원 명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자 명단 ·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 2 2 2 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	
납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납품확인서(납품계) · 납품 물량 내역서 · 테스트 결과서 · 운영설명서 ·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 2 2 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수요청일로부터 7일전 	
검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준공검사원 · 준공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· 사진첩 · 하자보수 지침서 ·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 2 2 2 2 	사업완료일 전까지	

□ 사진제출

○ 계약자는 사업 진행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- 설치착수 전, 후의 현장사진
- 설치공사의 주요사항
- 설치완료 후 육안에 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공정
- 책임자가 촬영을 지시한 사항

3. 기타 요청 사항

□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

-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,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
 -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,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 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
 - 사업관리자(PM)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
 -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,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,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

□ 업무수행 조건

-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
-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, 중간 보고서,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다만 보고서 형태,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

□ 보안조치

-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,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

4. 유의사항
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, 모든 제작물(이미지, 사진 등)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※ 다만,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, 보완,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
-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. 다만,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보안, 영업비밀 등)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
- 계약 및 협상 등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계약예규(기획재정부)」 등 관련 규정에 의함

1. 제안서 작성방법

□ 제안서 규격 : A4 가로, PDF

□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

-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.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.
-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“~할 수도 있다”, “~를 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안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KS, 관련 법규, 표준규격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.
-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, 제출 완료 후 추가 또는 수정, 변경은 할 수 없다.

□ 제안서 목차 및 구성

- 제안서 표지는 별지에 정해진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고 표지에 사업 관리자(PM) 연락처(전화번호, e-메일 등) 기재

작성 항목*	작성 방법
I. 제안개요 1. 제안 목적 2. 수행 범위 3. 제안의 특징 및 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,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,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
II. 제안사 일반 1. 일반현황 2. 조직 및 인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○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
III. 사업수행부문 1. 개요 2. 추진목표 및 전략 3. 주요 사업내용 4. 세부과제별 추진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○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○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○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•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•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
IV. 사업관리 부문 1. 추진일정 계획 2.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.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○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, 단계별 검토회의 등○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
V. 첨부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<p>*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</p>

* “작성 항목”은 참고사항이며, 제안사가 작성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목차 구성이 가능함

□ 제안서 제출방법 : 입찰공고문 참조

○ 입찰 구비 서류

번호	구분	규격	내용	분량	비고
1	제안서	A4	정량적 제안서 (정량평가자료 및 V. 별지서식)	-	
		A4	정성적 제안서	-	
2	발표자료	A4	제안발표자료	-	
3	기타서류	A4	필요시	-	

2. 제안서 평가기준

□ 낙찰자 결정방식 : 제안평가 /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
○ 종합평가(100%) = 기술능력평가(80%) + 입찰가격평가(20%)

※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%(68점)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
-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,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. 단, 최저 및 최고점수에 동일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
-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,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
-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함
- 입찰가격평가는 「(기재부 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[별표] 주1)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

○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

(1) 정량평가 (10점)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 기준(항목설명)	배점
사업일반 (10점)	경영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 - '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' [별표 8]에 따름 	10점

(2) 정성평가 (70점)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 기준(항목설명)	배점
사업일반 (10점)	사업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○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	5점
	관련분야 전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○ 사업 추진 관련 기술·지식 보유 	5점
사업수행 (30점)	추진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○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	5점
	추진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방법의 구체성, 제안내용의 적정성, 및 실현가능성 	7점
	관리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	8점
	수행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○ 참여인력의 전문성 	10점
사업관리 (15점)	사업관리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○ 사업 수행 활동의 적절성 ○ 진척관리, 위험관리, 보고체계의 적정성 	10점
	품질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○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, 실현 가능성 	5점
제품 적합성 (15점)	제품 기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모두 구현여부 ○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 	10점
	제품 유지보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지보수조직의 적절성 ○ 유지보수활동 및 범위의 적절성 	5점
계			70점

○ (참고1)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평가

‘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’ [별표 8]

경영상태 평가기준

신용평가등급			평점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
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배점의 100%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배점의 95%
B+, B0, B-	B-	B+, B0, B-	배점의 90%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배점의 70%

*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

[주]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.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,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. 다만,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- 주 1에도 불구하고,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-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.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「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」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,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. 다만, 제안서 평가일 전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,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)를 제출하여야 한다.(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)
-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.
(예) (A사 점수×A사 지분율)+(B사 점수×B사 지분율)…
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
3. 제안서 평가

- 조달청 「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」 제12조에 따름
- 평가 일정 : 입찰공고문 참조

4. 제안 관련 문의

- 김도현(디지털통신융합본부 디지털통신융합사업팀)
061-350-1548 / dohyeon021@kca.kr

1. 입찰방식 : 중앙조달, 제한경쟁입찰

2. 입찰참가자격
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나라장터(G2B)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자(업종코드 : 0036)
-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(세부품명번호 : 4322261901)를 제조 또는 공급한 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27조의5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12조 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· 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(가격입찰서)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.)

V

별지서식

[별지 제1호] 정보 비공개 동의서

[별지 제2호] 일반현황 및 연혁

[별지 제3호]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

[별지 제4호] 총괄책임자 이력사항

[별지 제5호] 제안서 표지 서식

[별지 제1호 서식]

정보 비공개 동의서

회사명 :

주소(소재지) :

성명(대표자) :

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'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'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상호 :

대표자 : (인)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일반현황 및 연혁

회사명			
대표자		전화번호(대표)	
주소			
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			
설립년도		사업분야	
해당분야 종사기간			
주요연혁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참여인력 현황 총괄표(제출일 기준)

번호	성명	담당업무	해당분야 근무경력	참여율	비고

* 본 사업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

[별지 제4호 서식]

총괄책임자 이력사항

성명			연령	만 세
연락처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휴대전화		전자우편	
소속 및 직위				
본 과업에서의 역할				

경력

사업명	참여기간 (년월 ~ 년월)	담당업무	발주처	비고

제안서 표지

2024년도 종합유선방송사
8VSB 채널자막키어 구축 지원 사업
제 안 서

사업책임자 전화번호	
사업책임자 E-MAIL	